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3288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1. 12 선고 2019나144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3288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대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변론 종결 2018. 12. 6.

판결 선고 2019. 2.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 3. 27. 접수 제29995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28. 접수 제3048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2. 13. 접수 제170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자 피고와 같은 명칭으로의 변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단체인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대표자였던 D(법명 E)가 2017. 5. 9.경 사망하자 이를 기화로 D와 사형사제 관계에 있던 피고의 대표자 F(법명 G)이 원고와 별도의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 즉 원고에서, "B", 즉 피고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등기로서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 7. 25.경 창립 신도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면서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소외 H(법명 I)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등 조직을 갖추었고, 이후 1976. 10. 6. 충청북도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등록번호 J, 명칭 A, 대표자 H)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한 권리·의무 귀속주체로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사장은 A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며 수도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제14조)"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이를 추진하는 내용 등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1).

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은 1976. 7. 25.경 신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H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사실, ② K(법명 L)는 1985. 12. 29.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이 사건 사찰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D는 2014. 10. 1. K로부터 창건주 권리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③ 이 사건 사찰은 2017. 4. 25. M종교단체(이하 'M'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사설사암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2. "B"이라는 사찰명으로 M 산하 사찰로 등록되었고(등록번호 N2), 같은 날 D는 B의 주지로 임명된 사실, ④ D는 2017. 5. 9.경 사망한 사실, ⑤ F은 D의 사망 이후 M에 대하여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권리 승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M은 종헌 및 종법에 따라 F이 2017. 12. 6.경 문도승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⑥ 이후 M은 2018. 3. 13. F을 B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A"에서 "B"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2018. 3. 27. F의 신청에 따라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와 "B"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 명칭에 소속 종단명을 표시하였느냐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이 사건 사찰을 지칭하는 표시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대표자인 F이 이 사건 사찰과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종교단체로서의 피고 "B"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7,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A"에서 "B"으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기두

판사설일영

판사정선회

별지

-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이 아닌 원고 스스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도의 사원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한 원고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2)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였던 D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신청은 무효이고, 설령 그 신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M 산하 사찰로 등록되기 이전에 그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위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신청 이후 D가 사망한 사실만으로 그 신청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등록 이후 등록된 명칭과 창건주를 각 "O사"와 "C"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